

## 이란

# 외국인투자법 개정 또다시 좌절

이란의 현법수호위원회(Council of Guardians)<sup>1)</sup>는 지난 10월 의회(Majlis)를 통과한 외국인투자법(Law on the Attraction &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sup>2)</sup> 2차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내경제의 외국인 지배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어, 헌법 및 이슬람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3일 승인을 거부하였다.

개혁파가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연간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현법수호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증가가 체제불안의 사유가 될 것을 우려하여 법 개정을 막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개혁 양대 세력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집권 2기를 맞은 하타미 정부의 개혁정책은 다시 보수파의 반발에 밀려 그 추진 속도가 느려질 전망이다.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1979년 회교혁명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동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투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BOT 프로젝트<sup>3)</sup>,

- 1) 현법수호위원회는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성직자 6명과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법률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으로 매 3년마다 6명씩 교체됨. 동 위원회는 의회의 의결이 이슬람 원리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의회를 통과한 입법안에 대한 최종승인 권한과 헌법 최고해석 권한을 갖는 등 보수적 색채가 강한 기구임.
- 2) 동 법은 1955년 제정되고, 1957년부터 발효되었음.
- 3)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로, 프로젝트 수주업체가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자본설비를 완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본 설비를 운영하여 발생된 수익금으로 채무상환 및 배당 등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임.

buy-back<sup>4)</sup>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민간부문에 대한 모든 외국인투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많은 석유메이저들이 이란 석유산업에 buy-back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란 헌법의 제약으로 외국인투자로 분류되지 못한 buy-back과 같은 서비스 계약은 현행 투자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안<sup>5)</sup>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위원회로 송부되었으나, 지난 6월 동 위원회는 개정안이 '이란 경제에 대한 외국인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국내거주 이란인보다 해외거주 이란인을 우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승인을 거부하고 의회로 회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수정한 2차 개정안(10월 29일 의회 통과)을 헌법수호위원회에 재상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해외거주 이란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격 부여 배제, ②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또는 은행의 보증 불허, ③ 기간산업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대상 범위 축소, ④ 외국인 투자지분 양도형태의 제한, ⑤ 외국인 투자가액 평가시 적용하는 환율을 중앙은행이 결정 등이다.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①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취득 허용은 국가영토의 보전

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음, ② 개인투자의 허용은 이란에 적대적인 외국정부와 관계된 인사에 의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음, ③ 외국인에 의한 경제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부재로 국가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④ 외국인투자 가능분야가 불명확함, ⑤ 투자형태로 파이낸싱을 허용하는 것은 이자수취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법에 위배됨, ⑥ 투자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관의 보증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 ⑦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⑧ 투자조건의 결정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됨 등의 사유를 들어 2차 개정안의 승인도 거부하였다.

2차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자격에서 외국거주 이란인들을 배제하고 외국인투자 대상범위를 제한하는 등 1차 개정안에 비하여 후퇴한 것이나, 보수파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위원회가 동 개정안의 승인을 다시 거부한 것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보다는 현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보수파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회로서는 헌법수호위원회가 거부한 2차 개정안을 의회가 다시 수정하여 동 위원회 앞으로 제출하거나,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sup>6)</sup>에 회부하여

4) buy-back 계약하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투자비용 부담 및 재원조달 등을 담당하게 되며 추후에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의 판매를 통해서 모든 투자비용(자본투자금액, 금융비용, 운용비용 및 기대수익률 등)을 통상 5~7년의 기간에 걸쳐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5)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안은 합작투자시 현재 49%인 외국인투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자산과 소득에 대한 자유로운 외화송금을 보장하며 내국인투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6) 최고지도자를 보좌하고 장기국가정책을 입안하며, 헌법수호위원회와 의회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

중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헌법수호위원회의 거부사유를 다시 반영하여 3차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법개정의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국정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도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이끄는 동위원회가 주로 보수파와 헌법수호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수파가 현 내각의 개혁파 관료들에 대해 부폐혐의로 탄핵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12월 17일자 이란의 한 신문은 의회 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헌법수호위원회와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해 양자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재수정이나 국정조정위원회의 중재는 양자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외국인투자법 개정,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시급한 과제

對이란 외국인투자의 역사는 회교혁명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회교혁명 이전, 对이란 외국인투자는 서구 열강의 지역패권 확보와 이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이란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낳게 되었다. 이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1955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제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그 기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란 경제의 국제화가 촉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회교혁명 전까지 등록된 외국인 민간투자는 총 1,641건에 달하였으며, 혁명 분위기가 확산되기 직전인 1975년과 1976년의 등록 건수는 각각 598 건 및 338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9년 회교혁명의 여파로 투자기업의 자산이 몰수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이 가중됨에 따라, 기승인 투자계약의 대부분이 무효화되고 투자자들은 신규투자가 아닌 투자원금 회수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1978~1993년 사이 약 150억 리알의 외국인투자가 회수되었다.

혁명 이후 거의 전무하던 외국인투자는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95~2000)이 시작된 1995년을 전후하여 재개되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종 우호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1993~1998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석유화학 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비롯한 기타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1994년 이후 对이란 외국인투자는 서서히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수 및 금액 모두 혁명 전에 비하여 크게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접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이란의 특수한 정치·경제 상황 및 외국인투자와 관

〈표 1〉

외국인투자 분야 및 실적(1993-1998)

단위 : 백만 달러

분야	금액
화학	1,311.21
자동차 등	184.60
건설 및 호텔	160
광물	118.12
Cellulose	72.28
섬유 및 기죽	71.94
식품	45.75
교통 및 통신	13.23
전기 및 전자	6.85
의료장비 등	0.82
연구 및 용역 등	0.05
합계	1,984.85

자료: 이란어 신문 Noruz, Nov. 6, 2001.

련된 법적 보호장치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법적 보호장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가장 기본

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향후 외국인투자 법 개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란 주재원】